

1. 전자조판료

(10.5P 2분 행간기준) (단위 : 원)

활자크기	판 형	기준단가(면당) 전자조판료	활자크기	판 형	기준단가(면당) 전자조판료
8P (12급)	4×6배판(16절)	8,350	9.75P (14급)	4×6배판(16절)	6,350
	4×6 판(32절)	3,600		4×6 판(32절)	2,790
	국 배 판(10절)	12,090		국 배 판(10절)	9,460
	국 판(25절)	4,810		국 판(25절)	3,760
	크라운판(18절)	7,170		크라운판(18절)	5,440
9P (13급)	4×6배판(16절)	6,960	10.5P (15급)	4×6배판(16절)	5,800
	4×6 판(32절)	3,070		4×6 판(32절)	2,540
	국 배 판(10절)	10,330		국 배 판(10절)	8,660
	국 판(25절)	4,120		국 판(25절)	3,420
	크라운판(18절)	5,930		크라운판(18절)	4,970

- 1) 외국문자(영문 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 등이 섞인 혼합판은 별도의 합증조건표를 따르며, 외국 문자(영문제외)가 5% 이상~10% 미만 섞인 혼합판은 20%를 가산한다.
-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 4)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 5) 외국문자중 벽자나 간체자(약자)의 혼합판은 원고의 내용에 따라 특수합증(시중가격 준용)을 할 수 있다.

1-1. 전자조판료 합증 조건표 (단위 : 원)

호수별	판 형	기본요금	외국문자 혼합(영문제외)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		
			10~20% 혼합40%합증	30~50% 50%합증	60~80% 70%합증	90~100% 90%합증	30~50% 60%합증	60~80% 80%합증	90~100% 100%합증
8P	4×6배판(16절)	8,350	11,690	12,520	14,190	15,860	13,360	15,030	16,700
	4×6 판(32절)	3,600	5,040	5,400	6,120	6,840	5,760	6,480	7,200
	국 배 판(10절)	12,090	16,920	18,130	20,550	22,970	19,340	21,760	24,180
	국 판(25절)	4,810	6,730	7,210	8,170	9,130	7,690	8,650	9,620
	크라운판(18절)	7,170	10,030	10,750	12,180	13,620	11,470	12,900	14,340
9P	4×6배판(16절)	6,960	9,740	10,440	11,830	13,220	11,130	12,520	13,920
	4×6 판(32절)	3,070	4,290	4,600	5,210	5,830	4,910	5,520	6,140
	국 배 판(10절)	10,330	14,460	15,490	17,560	19,620	16,520	18,590	20,660
	국 판(25절)	4,120	5,760	6,180	7,000	7,820	6,590	7,410	8,240
	크라운판(18절)	5,930	8,300	8,890	10,080	11,260	9,480	10,670	11,860
9.75P	4×6배판(16절)	6,350	8,890	9,520	10,790	12,060	10,160	11,430	12,700
	4×6 판(32절)	2,790	3,900	4,180	4,740	5,300	4,460	5,020	5,580
	국 배 판(10절)	9,460	13,240	14,190	16,080	17,970	15,130	17,020	18,920
	국 판(25절)	3,760	5,260	5,640	6,390	7,140	6,010	6,760	7,520
	크라운판(18절)	5,440	7,610	8,160	9,240	10,330	8,700	9,790	10,880
10.5P	4×6배판(16절)	5,800	8,120	8,700	9,860	11,020	9,280	10,440	11,600
	4×6 판(32절)	2,540	3,550	3,810	4,310	4,820	4,060	4,570	5,080
	국 배 판(10절)	8,660	12,120	12,990	14,720	16,450	13,850	15,580	17,320
	국 판(25절)	3,420	4,780	5,130	5,810	6,490	5,470	6,150	6,840
	크라운판(18절)	4,970	6,950	7,450	8,440	9,440	7,950	8,940	9,940

2. 읍셋사진제판료 (단위 : 원)

색도별	절수	기준단가	색도별	절수	기준단가
흑 색 (단색)	전지	59,270	원 색 (색분해 4색도)	전지	356,950
	2절	32,190		2절	246,200
	4절	16,520		4절	163,170
	6절	11,080		6절	109,890
	8절	8,370		8절	83,400
	10절	6,110		10절	70,280
	16절	4,210		16절	52,220
	18절	3,910		25절	42,950
	25절	3,090		32절	32,590
	32절	2,250		50절	24,100
				80절	16,980
				100절	11,980

- 1) 원색판은 4색을 기준으로 하고 1색도 추가마다 25%를 가산한다.
- 2) 색분해를 하지 않는 다색판은 색도별로 단색제판료를 적용한다.
- 3) 망판의 선수, %수가 다를 경우에는 흑색(단색)판의 20%를 각각 가산한다.
- 4) 단색 또는 2색분해할 경우에는 원색분해 기준요금의 25%, 50%를 각각 가산한다.

3. 인쇄판대 (4×6판기준) (단위 : 원)

구분	2절	전지	국판전지
P.S판	12,140	20,890	4x6판 전지의 69.4%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 2) 인쇄판(P·S판)의 인쇄력 : 70,000통

4. 읍셋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준단가 (통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통 까지	13.28	23.72	34.37	43.46
2,000통 까지	12.03	21.42	30.77	39.05
3,000통 까지	10.71	18.85	26.97	33.85
5,000통 까지	9.30	16.21	22.90	28.74
7,000통 까지	8.67	14.99	20.91	26.29
10,000통 까지	7.84	13.48	18.54	23.37
13,000통 까지	6.52	11.11	14.94	18.89
13,000통 초과	5.17	8.55	11.06	14.29

- 1) 150g/m<sup>2</sup> 이상의 후지 또는 50g/m<sup>2</sup>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 3) 금분, 은분, 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5)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 가) 4×6전지 70연 이상 100연 미만 : 3%
  - 나) 4×6전지 100연 이상 150연 미만 : 5%
  - 다) 4×6전지 150연 이상 200연 미만 : 6%
  - 라) 4×6전지 200연 이상 : 7%
-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5. 책자제본료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양장	양장
4×6배판(16절)	0.974	1.134	1.617
4×6 판(32절)	0.771	0.915	1.347
국 배 판(10절)	1.683	1.980	2.886
국 판(25절)	0.798	0.968	1.382
크라온판(18절)	0.869	1.049	1.491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아트지, 인디이지, 박엽지, 100g/m<sup>2</sup>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 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날장을 말하며, 8페이지, 16페이지등 대당 물 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6.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조판료 (면당) (단위 : 원)

절 수	기준단가	절 수	기준단가
2절	57,330	9절	15,100
3절	46,130	10절	13,900
4절	36,570	16절	9,980
5절	26,040	25절	6,000
6절	21,720	32절	4,400
8절	19,070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 조건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읍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준단가 (통당)		통 수	기준단가 (통당)	
	1색도	2색도		1색도	2색도
1,000통 까지	11.36	20.40	7,000통 까지	7.42	12.62
2,000통 까지	10.19	18.14	10,000통 까지	6.78	11.42
3,000통 까지	9.25	16.05	13,000통 까지	5.52	9.27
5,000통 까지	7.83	13.68	13,000통 초과	4.38	7.14

- 1) 150g/m<sup>2</sup> 이상의 후지 또는 50g/m<sup>2</sup>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 2) 금분, 은분, 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 3)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4) 연번호인쇄는 별도1색도로 계산하며 20%를 가산한다.
- 5) 미상으로 절취선을 넣을 때에는 30%를 가산한다.
-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 7)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8.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무사무선철, 100매 1권 기준) (단위 : 원)

판형	기준단가
4절	116.69
8절	86.79
16절	62.41
32절	34.57
50절	23.27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아트지, 박엽지, 100g/m<sup>2</sup>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 3)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 4)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 5) 띠돌림 제본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9.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조판료 (단위 : 원)

규 격	기준단가
15" × 11" (38.1cm × 27.9cm)	16,110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 × 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산한다.

10.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색도 기준) (단위 : 원)

규격	기준단가
15" × 11" (38.1cm × 27.9cm)	9,940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 × 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1.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 : 원)

규격	기준단가
15" × 11" (38.1cm × 27.9cm)	2,900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 × 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2.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료(15" × 11" 기준) (단위 : 원)

통수	기준단가 (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0통 까지	2.65	4.68	6.76	8.61
20,000통 까지	2.37	4.14	5.99	7.45
40,000통 까지	1.97	3.48	4.99	6.12
60,000통 까지	1.69	2.94	4.17	5.24
100,000통 까지	1.47	2.51	3.57	4.36
100,000통 초과	1.28	2.23	3.11	3.81

- 1)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3) 라인프린터용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상한다.
- 5) 10,000통 미만은 10,000통으로 계상한다.

13. 읍셋운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수	기준단가 (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50,000통 까지	3.58	6.52	9.32	11.83
70,000통 까지	3.41	5.99	8.63	10.89
100,000통 까지	3.14	5.50	7.71	9.75
150,000통 까지	2.69	4.71	6.63	8.34
200,000통 까지	2.62	4.45	6.19	7.80
200,000통 초과	2.57	4.08	5.85	7.28

- 1)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3) 50,000통 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운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14. 자동책자제본료(면당) (단위 : 원)

판형	무사무선철	반양장	양장
4×6배판(16절)	0.591	0.720	1.004
4×6 판(32절)	0.485	0.564	0.838
국 배 판(10절)	1.047	1.215	1.739
국 판(25절)	0.511	0.606	0.872
크라운판(18절)	0.550	0.665	0.918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상한다.
-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m<sup>2</sup>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 3) 최저기준 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제외)

15. 인쇄용지손지율

(1) 읍셋(매엽기)인쇄 손지율(단위 : %)

구분	1색 (1도양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통 까지	9.0	12.0	14.0	17.0	18.0	23.0	23.0	29.0
2,000통 까지	8.2	11.1	13.0	16.0	16.5	21.5	21.0	27.0
3,000통 까지	7.0	9.3	11.0	14.0	14.0	18.5	17.5	23.0
5,000통 까지	5.5	7.3	8.4	10.8	11.0	14.5	13.5	18.0
10,000통 까지	3.7	5.0	5.7	7.2	7.5	9.9	9.3	12.4
13,000통 까지	3.4	4.6	5.2	6.6	6.9	9.0	8.6	11.3
13,000통 초과	2.5	3.3	3.8	4.8	5.0	6.5	6.3	8.2

(2) 읍셋운전인쇄 손지율 (단위 : %)

구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50,000통 까지	6.5	7.8	7.8	9.4	9.1	11.0	10.0	12.0
70,000통 까지	5.9	7.1	7.1	8.5	8.3	10.0	9.2	11.0
100,000통 까지	4.9	5.9	5.9	7.1	6.9	8.3	7.8	9.3
150,000통 까지	4.1	5.0	5.0	6.0	5.8	7.0	6.6	7.9
200,000통 까지	3.6	4.4	4.4	5.3	5.1	6.2	5.8	7.0
200,000통 초과	3.5	4.2	4.2	5.1	4.9	5.9	5.6	6.7

(3)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

구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0통 까지	12.9	14.1	13.8	15.2	14.7	16.1	15.6	17.1
20,000통 까지	10.7	11.7	11.3	12.5	12.0	13.2	12.7	13.9
40,000통 까지	7.3	8.0	7.7	8.4	8.1	8.8	8.3	9.1
60,000통 까지	5.8	6.2	6.0	6.5	6.3	6.8	6.4	6.9
100,000통 까지	5.1	5.5	5.2	5.7	5.4	5.9	5.6	6.1
100,000통 초과	4.9	5.3	5.0	5.5	5.1	5.6	5.3	5.8

### 경인쇄 기준요금

주간작업 10포인트

<전자조판기준>

(인쇄면당)

절수	지질	50부까지	10부마다	절수	지질	50부까지	10부마다
8절	신문용지	15,080	132	25절	신문용지	5,510	72
	중질지	15,270	157		중질지	5,540	74
	백상지	15,370	183		백상지	5,580	80
10절	신문용지	11,960	122	32절	신문용지	4,150	47
	중질지	12,040	140		중질지	4,160	50
	백상지	12,150	157		백상지	4,190	55
16절	신문용지	8,070	81				
	중질지	8,120	91				
	백상지	8,180	101				

- 1)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중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1. 경인쇄 활증요금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구분	9포인트	8포인트	구분	9포인트	8포인트
8절	1,200	2,600	25절	370	820
10절	950	2,050	32절	330	740
16절	650	1,400			

5. 행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아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m<sup>2</sup>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나. 10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지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sup>2</sup>, 중질지 70g/m<sup>2</sup>, 백상지 80g/m<sup>2</sup>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sup>2</sup> 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sup>2</sup>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면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 : 용지 총 소요량(면)×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오프셋 인쇄물이 혼합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 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패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구분	조판생략 감액 <sup>(1)</sup>	조판생략 감액 <sup>(2)</sup>	조판생략 감액 <sup>(3)</sup>
8절	8,560	6,690	4,420
10절	6,780	5,150	3,500
16절	4,620	3,470	2,380
25절	2,950	2,320	1,530
32절	2,390	1,500	1,240

- (1)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쇄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쇄지를 재활용할 때
  - (2)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3)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9.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2003년 조달청인쇄기준요금